

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사용 인 자로서 수습 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 사용 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 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 관외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 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 액이 산입된다.

*예시: 주 40시간 노동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최저임금인상

- 추진 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 내용
 - 2022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
 -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
- 시 행 일: 2022년 1월 1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된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주요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 시 행 일: 2022년 1월 1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 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추진 배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 주요 내용: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시행일
 - '20.1월: 300인 이상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노동자나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동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된다. 2022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2021년 220만 원 미만) 노동자·예술인·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일용노동자의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 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21년) 1년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것 → (22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것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개요

- 주요 내용: 소규모사업 저임금 노동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 지원 대상 및 수준
 -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노동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
 - 지원 수준: 노동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K-Digital Training에 새로운 훈련유형이 신설되어 보다 많은 훈련기관, 선도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게 된다. K-Digital Training의 훈련유형은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총 4가지로, 기존 훈련유형인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외에, 민간 협·단체,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인전자원개발위원회(RSC)가 각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디지털 선도기업/지역 주도형 아카데미가 신설되었다. 2022년 1차 공모는 4가지 훈련유형에 대한 통합공모 방식으로, 지난 11월 18일에 실시하여 2022년 2월 및 4월에 공모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K-Digital Training의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 추진 배경: 「민·관 협력 기반의 SW 인재양성 대책」(6.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SW 인력난 대응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주도형 인재양성 추진
- 주요 내용: K-Digital Training 내, 민간 협·단체,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주도하는 새로운 훈련유형을 신설, 추진
- 시 행 일: 2021년 8~10월 훈련과정 선정, '21년 말부터 훈련과정 본격 개설

2022년 안전 투자 혁신사업 개편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부양 등을 위해 K-뉴딜 일환으로 시행 중인 안전 투자 혁신사업이 2022년 개편 시행된다. 위험기계교체 지원대상은 기존 이동식 크레인 등 3종에 노후 (3년 이상)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가 추가된다.

*6종: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위험공정개선 지원 대상은 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에서 추락·끼임 사고 사망 고위험 3대 업종으로 확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 중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이울러,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위험기계교체는 최대 7천만 원으로 지원 한도가 조정된다. (단, 위험공정 개선은 지원 한도 동일)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 시행

- 추진 배경: 구조적 위험성이 있거나 노후된 위험기계교체 및 노후 뿌리산업·사고사망 고위험 업종 유해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 확보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 가입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분야
 - 위험기계교체(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노후 안전검사대상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6종)

- 위험공정개선(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고위험 3대 업종)

○ 지원 한도: 위험기계교체(최대 7천만 원), 위험공정개선(최대 1억 원)

□ 시행 일: 2022년 1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노동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되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추진 배경: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유도

□ 주요 내용: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 현행: 3.4%

* 개정: ('22~'23년) 3.6% → ('24년~) 3.8%

□ 시행 일: 2022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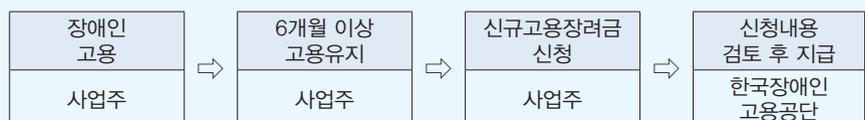
장애인 노동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노동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원금액: 장애인 노동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 원, 1년 고용유지 시 360~960만 원

구분	6개월 지원금액	1년 지원금액	비고
경증남성	180 (30만 원X6)	360 (30만 원X12)	월 임금의 60%와 단가 (월 30만 원~80만 원) 중 낮은 금액 지급
경증여성	270 (45만 원X6)	540 (45만 원X12)	
중증남성	360 (60만 원X6)	720 (60만 원X12)	
중증여성	480 (80만 원X6)	960 (80만 원X12)	

*지원절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시행

장애인 노동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 추진 배경: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도모
- 주요 내용: 상시노동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
- 시행 일: 2022년 1월 1일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노동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 완화 및 노동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추진 배경: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주요 내용: 노동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전문적 자산 운용하여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적립금 운용성과 제고를 통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
-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